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9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소병훈·백승아·문정복

박 정・정성호・이기헌

안태준 • 어기구 • 정준호

박희승 · 김교흥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·휴교 기간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.6%로 가장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.

하지만, 부모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,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양육자인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. 따라서 조부모가 부모대신 본인의 손자녀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려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

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환 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4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"손자녀돌보미"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영유 아를 보육하는 조부모로서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 을 말한다.

제34조의2제2항 중 "서비스"를 "서비스 또는 제34조의4에 따른 손자녀돌보미"로 한다.

제34조의7을 제34조의8로 하고, 제34조의5를 제34조의7로 하며, 제34조의4를 제34조의5로 하고,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4조의4(손자녀돌보미 신고 등) ①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손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손 자녀돌보미에게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

- ·기준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34조의5(종전의 제34조의4)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3항"으로 한다.
 - ③ 손자녀돌보미는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수 있다.

제34조의7(종전의 제34조의5)제1항 중 "제34조의4제1항"을 "제34조의5 제1항 또는 제3항"으로 한다.

제34조의8(종전의 제34조의7)제1항 중 "제34조의4"를 "제34조의5"로 한다.

제40조의2제1항 중 "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 4조 및 제34조의2"를 "보호자 또는 손자녀돌보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,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제2항"으로 한다. 제54조제4항제4호 중 "제34조 및 제34조의2"를 "제34조, 제34조의2 또 는 제34조의4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6. "손자녀돌보미"란 부모가 돌
	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
	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조부모
	로서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
	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.
제34조의2(양육수당) ① (생 략)	제34조의2(양육수당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	②
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<u>서</u>	<u>\</u>
<u>비스</u> 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	비스 또는 제34조의4에 따른
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	<u> 손자녀돌보미</u>
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	
할 수 있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34조의4(손자녀돌보미 신고 등)
	①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사
	람은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
	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
	손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

제34조의4(비용 지원의 신청) ① · ② (생 략) <신 설>

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 부렁으로 정한다.

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-----제34조의5제1항 또는 제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

<u>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</u> ス	사
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	<u>신</u>
고하여야 한다.	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 린이집이나 「유아교육법」 제 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 요한 경우 손자녀돌보미에게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 · 기준 ·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 다.
- 제34조의5(비용 지원의 신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손자녀돌보미는 제34조의4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 및 제3항-----
- 제34조의5(조사·질문) ① 보건복 제34조의7(조사·질문) ① ------
 - 3항-----

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밖의 소득활동,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, 그 밖의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수있다.

② ~ ⑦ (생 략)

제34조의7(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) ①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 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40조의2(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<u>보호자가 거짓이나 그</u>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	
<u>제34조의8</u> (비용 지원 신청	관련
정보의 고지) ①	
<u></u> 제	34조의
<u>5</u>	
② (현행과 같음)	
제40조의2(보육비용 지원액	등의
환수) ①	
보호자 또는 손자	녀돌보
미가 거짓이나 그 밖의	부정한
방법으로 제34조, 제34조	의2 또
<u>는 제34조의4제2항</u>	

전부	또는	일부를	환수할	수
있다.				

②·③ (생 략)

제54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3의3. (생략)
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자
- 5. ~ 8. (생략)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54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4
<u>.</u>
1. ~ 3의3. (현행과 같음)
4
제34조, 제34조의2 또
는 제34조의4제2항
5. ~ 8. (현행과 같음)